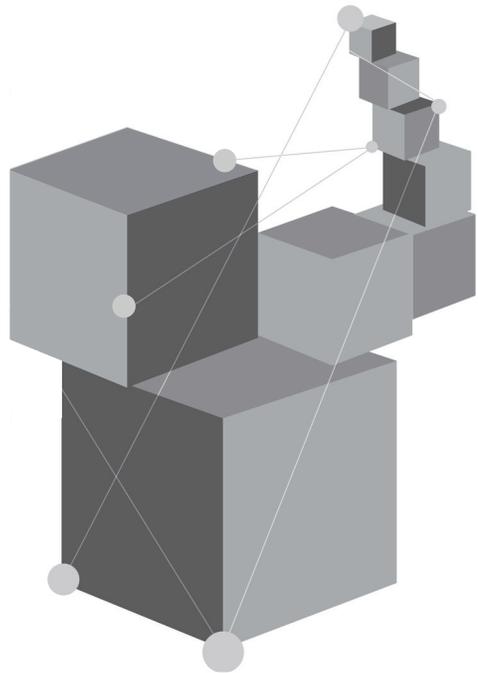


편집지침



1. 표제의 원칙

▲ 2012-1061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매일 발행인 최 운 채

<주문>

경북매일 2012년 4월 16일자 16면 「일산 위시티 벽산 블루밍 아파트/7억 짜리 2억3천만원에 판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북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분양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2억3천300만원에 사세요. 2년 뒤에 보장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환불도 해줍니다”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마케팅이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시행사가 파격적인 분양가 할인은 물론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에 환매조건부 분양 등의 조건을 내놓아 화제다.

화제의 아파트는 일산 위시티 벽산 블루밍 아파트. 시행사인 청원건설은 6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2년 동안 살아보고 당시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시행사가 분양가를 환불해 준다는 환매조건부를 내걸고 수요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그동안 건설사가 써왔던 미분양 털기 전략을 총동원했다. 157㎡(47평)의 경우 최초 분양가는 6억9천660만원이다. 이 회사는 우선 4천570만원의 분양가를 할인해 준다. 6억5천90만원이 실제 건설사가 분양하는 가격이다. 이 중 60%인 4억1천790만원은 대출 알선을 해준다. 2년간의 대출이자 3천960만원은 건설사가 지불한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를 제목만 보면 7억짜리 아파트를 단돈 2억3천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오랫동안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6억9천660만원짜리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에서 4천570만원 할인 △최초 분양가의 60%인 중도금 4억1천790만원 무이자 대출 △2년간 대출이자 3천960만원 건설사 지불 △취득세 1천850만원도 건설사가 선지급 △2년 뒤 시세가 분양가를 밀돌면 환불해준다는 파격적인 할인판매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할인 총액은 8천530만원에 불과하고, 2년 뒤 시세가 분양가를 상회해 환매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과 취득세 4억3천여만 원을 건설사 측에 내야 한다.

그런데도 관내를 벗어난 수도권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땡처리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과장한 위 기사의 제목은 본문 내용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투기심리를 부추긴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79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2년 5월 2일자 24, 25면 「다~고객 탓이오!/발뺨하는 농협/뽕뽕스런 롯데카드/소비자 ‘민원 해결’ 평가 낙제점」 기사와 제목, 25면 「▶ 왜 이런 ‘고객 무시현상’이 지속되는가?/최원병 회장-박상훈 사장 ‘겉치레’ 때문 …」 제목의 기사, 5월 22일자 21면 「빠돌리고 속이고 어기고 … /하나같이 나쁜 짓만 … 하나은행」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회장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허탈이다. (한시) 일종의 부끄러움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롯데**
 최지현을 비롯해서 김복희 대한 의견은 거의 일치했다. 물론 한 것을 고치지 않는 것에 문제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 최악의 금융사로 농협과 롯데카드가 꼽혔다.

농협(사천 농축)과 롯데카드는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을 보여줬다. 앞서 그해의 금융사 선정평가-농협, 롯데카드 우수기업

순위	은행 (은행)	카드 (카드)
1	대우	삼성
2	농협(111)	신협
3	신협(111)	신협
4	신협(111)	신협
5	신협(111)	신협

다~ 고객 탕이오!

1 발뺌하는 [농협]
2 뻔뻔스런 [롯데카드]
소비자 '민원 해결' 평가 낙제점

▶ 소비자 불만 제보 받습니다
 스포츠조선이 독자 취재 팀이 발간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기업관련 내용이면 무엇이든 제보해 주시면, 100% 답변드립니다. 이메일 em@sporthost.com

▶ 왜 이런 '고객 무시현상'이 지속되는가?
 최원병 회장-박상훈 사장 '걸치레' 때문...

당사가 민원 관련 질문에 대해 사정없이 답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최원병 영지(CEO)의 자질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최원병 농협(사천)은 올해는 2008년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전 농축)은 2009년 취임했다. 공교롭게도 양사 모두 최고 경영자의 교체시점과 민원발생평가 등급하락 시점이 비슷하다. 또 최원병은 최원병이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11년도 민원발생평가 결과'에서 두 회사 모두 5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금감원이 지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건수, 금융회사의 해결 노력, 충자산, 고객수 등의 영업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롯데카드와 농협은 2009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순으로 등급이 떨어졌다. 롯데카드의 2009년 민원발생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뒤 추락 중이다. 2009년 2등급을 받더니 2010년에는 3등급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2011년에는 5등급을 기록했다. 농협도 비슷하다. 2009년 2등급을 고영으로 하위 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4등급을, 2011년에는 5등급에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원발생 해결은 시스템적인 문제 근본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민원해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상위 등급을 가꿔온 금융사들은 매년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구은행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민원발생평가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키뱅크는 삼성카드가 2009년부터 1등급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고객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처리하는 시스템이 가능한 고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금감원에 이런 관례 주축, 향후 개선 방안이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계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합의 조정 등 신속한 민원처리 노력으로 전체적으로 개선된 수준은 보았지만 지속적으로 하위등급으로 평가되는 금융사에 대해 '불가항력'을 면제해 준다고 강조했다. 최원병은 최원병이

<스포츠조선 2012년 5월 2일자 24, 25면>

<다~고객 탕이오!>= 『(전략) 동서양을 막론하고 잘못에 대한 의견은 거의 일치한다.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 최악의 금융사로 농협과 롯데카드가 꼽혔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11년도 민원발생평가 결과'에서 두 회사 모두 5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건수, 금융회사의 해결 노력, 충자산, 고객수 등의 영업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

한 결과다. 회사별 등급은 5등급까지. 다시말해 농협과 롯데카드가 각각 은행과 카드사 중 꼴찌에 이름을 올렸다는 얘기다.

문제는 농협과 롯데카드가 매년 민원발생평가에서 하위등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수치로 보면 이해가 쉽다. 롯데카드는 금감원의 2008년 민원발생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뒤 추락 중이다. 2009년 2등급을 받더니 2010년에는 3등급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2011년에는 5등급을 기록했다.

농협도 비슷하다. 2008년 2등급을 고점으로 하위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4등급을, 2011년에는 5등급에 랭크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원발생 해결은 시스템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중략)

금감원도 이런 점에 주목, 향후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계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합의 조정 등 신속한 민원처리 노력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을 보였지만 지속적으로 하위등급으로 평가되는 금융사에 대해 분기별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검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원병 회장-박상훈 사장 ‘걸치레’ 때문 …〉= 『양사가 민원 관련 문제에 대해 시정보다 방치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최고경영자(CEO)의 자질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최원병 농협회장은 2008년,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은 2009년 취임했다. 공교롭게도 양사 모두 최고경영자의 교체시점과 등급하락 시점이 비슷하다. 또 외형확장에 치중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외형확장에 신경을 쓰다보면 내실을 다지는데 소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협에선 최근 몇년간 전산장애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고 임직원의 각종 횡령사건도 잦았다. 롯데카드는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가맹

점 수수료를 인상, 소상공인단체연합회로부터 결제거부 통보를 받았다.』

〈빠들리고 속이고 어기고...〉= 『‘시스템 문제인가, 폐쇄적 내부 업무처리의 결과인가.’

하나은행의 내부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은 기본, 이사회 의사록 조작까지 분야도 다양했다. 하나은행은 직원 개인의 문제, 실무자의 업무착오(실수)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매년 한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내부 경영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은 숫자놀음을 하는 곳으로 단순한 실수가 비리로 이어질 수는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시중은행은 일선 영업지점 창구직원의 경우 100원만 차이가 있어도 다시 계산을 맞추게 하는 등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다. 고객신뢰가 경쟁력이 되는 만큼 비리문제에 대해 엄격하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일반 은행과 업무방식이 다른 듯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375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28명의 임직원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를 비롯한 각종 내부 문제가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모 직원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기업이 국민관광상품권을 수천만원어치씩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 174억원 가량의 상품권을 불법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20억원 이상을 챙겼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 감독당국에 보고한 뒤 자체 징계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당 직원은 면직됐고 지점장 60여명 등 150여명의 직원들에게 경고 및 견책 등의 징계조치가 취해졌다. 하나은행은 당시 ‘조기 발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직원 개인의 문제로 은행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발빠르게 취했다는 설명.

그러나 하나은행은 횡령 규모가 174억4000만원에 달한 데다 담당자를 5년 8개월간 바꾸지 않았고, 관련부서를 자체검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내부 경영 시스템에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시스템적인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또 있다. 금감원은 국민관광상품

권 횡령 외에 PF대출 부실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2268억원 규모의 PF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부실한 관리를 통해 1506억28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여신심사만 제대로 이뤄져 있어도 손실을 막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난 2010년 10월 대주주 특수 관계인에게 총 7100억원의 신용공여를 하는 안건의 이사회 처리 과정도 문제였다. 신용공여는 반환의사가 있다는 점을 믿고 빌려줬던 금액을 받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하나은행은 하나SK카드, 하나캐피탈 등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안건을 의결했다. 더욱이 금감원 검사가 시작되자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한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재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록 허위 작성은 일종의 서류조작이다. 은행은 고객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곳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 과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 고객 신용정보 부당 조회 ▶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 담보 및 보증 설정업무 불철저 ▶ 그룹 내 임직원 겸직업무 불철저 ▶ 은행장 승인 없이 외부 영리업무 영위 등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등의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게 현 은행권의 상황”이라며 “(하나은행의 비리 문제가) 은행권에 불똥을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5대 김종준 은행장 취임을 계기로 ‘국내 최고 은행 만들기’에 나선 하나은행. 최근 발생한 각종 악재를 어떻게 대처해 경쟁력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위 5월 2일자 기사에서 농협과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1년 민원발생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 그 경위

와 배경 등을 묶어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농협은 은행 권역(16개사)에서 2008년 1등급, 2009년 2등급, 2010년 3등급에 이어 2011년에는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롯데카드는 신용카드 권역(5개사)에서 2008년 2등급, 2009년과 2010년 4등급에 이어 2011년에는 홀로 5등급으로 떨어졌다.

‘민원발생 평가’는 금융회사들이 민원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감원이 2002년부터 실시해 온 제도로 2011년도에는 은행,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등 5개 권역에서 74개사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금감원이 지난 4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평가에서는 은행 권역에서 농협, 신용카드에서는 롯데카드, 생보사 중에는 녹십자 등 5개사, 손보사 중에는 그린손보 등 4개사, 금융투자 권역에서는 유진투자 등 3개사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스포츠조선은 보도자료가 나온 지 13일이나 지난 시점에 생보, 손보, 금융투자 등 3개 권역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회사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농협과 롯데카드를 ‘국내 최악의 금융사’로 표현하면서 이 두 곳이 은행, 신용카드 권역에서 각각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 두 면에 걸쳐 큼지막하게 보도했다.

특히 큰 제목을 「다~고객 탓이오!」라고 달면서 그 밑에 「발뺌하는 농협」, 「뻔뻔스런 롯데카드」라는 신랄한 표현으로 중간 제목을 달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

스포츠조선은 또 양사 최고 경영자가 취임한 이후 등급 하락이 이어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일각에선 최고경영자(CEO)의 자질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비판적 내용으로 얼굴 사진을 곁들여 별도 상자 기사를 실었지만, 이에 대한 당사자나 양사 관계자들의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농협과 롯데카드 양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예단을 갖고 기획하고 작성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5월 22일자 기사에서는 ‘소비자 고발’이라는 고정 기획물을 통해 하나은행의 ‘국민관광상품권 횡령·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당 취급·이사회 의

사록 조작·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고객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잇따라 터져나온 내부비리에 대해 분석·진단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그런데 제목에서 '하나같이 나쁜 짓만 ... 하나은행'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실상을 극단적으로 과장하였다.

비록 하나은행에 여러가지 내부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은행의 하는 일 모두가 하나같이 나쁜 짓일 수는 없고 기사 본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없다. 이처럼 막말과 다름없는 극단적 표현은 기사의 기본요건인 객관성·정확성, '사실과 의견 차이'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이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81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문〉

중앙일보 2012년 5월 14일자 4면 「이정희 나가자 당권과 표결 방해, 200명 단상 난동 ... 이석기, 근처서 작전 지시/12일 중앙운영위 '광란' ... 인터넷 생중계에도 당권과 막장 행태」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는 폭력으로 얼룩진 막장 드라마였다. 회의 시작 지 7시간30분 만인 오후 9시40분. 심상정 대표가 첫 번째 안전인 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하자 곧바로 몸싸움이 시작됐다. 당권과 당원

200여 명이 순식간에 뛰어나와 단상을 점거했다.

“다 죽자고, 다 죽어” “이게 국회에서 하던 날치기구나” … . 이들은 물병과 종이컵, 자료집 등을 닥치는 대로 단상으로 집어던졌고 진행요원과 대표단을 폭행했다. 부정경선 진상조사를 진두지휘한 조준호 대표는 머리 끄덩이와 멍살을 잡혔다. 그러는 통에 그의 옷은 찢어졌다. 그는 폭행을 당한 탓에 다음 날 병원에 입원했다.

심상정 대표를 몸으로 감쌌던 유시민 대표도 두들겨 맞았다. 그의 안경은 당권파들과의 몸싸움 끝에 어디론가 날아갔다. 대표단이 퇴장한 후에도 이들은 단상 앞을 한 시간 이상 점거했다. 불법 폭력을 휘두른 그들은 “불법 중앙위 중단하라”고 외쳤다. ‘강행처리 반대’ ‘진상보고서 전면폐기’라고 적힌 손피켓을 든 채였다.

회의장 곳곳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당원 간의 말다툼이 벌어졌다. 비당권파 당원이 “이제 그만 뒤로 가시라. 토론으로 해결하자”고 하자 당권파는 “당신이 한 행동이 민주주의냐. 당신과 함께할 수 없으니 당을 떠나시라”고 공격했다. 결국 오후 11시30분 심상정 대표는 “더 이상 정상적인 회의가 불가능해 무기한 정회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당권파는 초반부터 작전을 짠 듯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당권파 운영위원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18번이나 똑같은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펄리버스터’ 전술을 구사했다. 300명의 참관인들은 회의장 뒤편에서 6시간30분 동안 계속 구호를 외쳤다. 행동도 거침이 없었다.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중략)

④ 작전 지시한 이석기= 이석기 당선인은 당초 중앙위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불참했다. 중앙위가 열리기 전 당권파의 사전행사에만 잠깐 얼굴을 내민 그는 중앙위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근처에서 중앙위원들과 계속 연락을 취했다. 이날 당권파 당원들은 “진상조사위 보고서와 언론 보도는 이석기 죽이기 프로젝트”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⑤ 미리 준비한 손피켓= 당권파는 ‘강행처리 반대’라고 인쇄된 손피켓을 미리 준비해왔다.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회의 파행을 예상하고 만든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이석기 당선인의 주장대로 줄기차게 ‘당원 총투표’를 요구해 왔지만, 이를 이날의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았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위 기사에서 4·11 총선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가 폭력사태로 끝나기까지 일련의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른바 ‘당권파’의 실세로 알려진 이석기 당선자의 움직임에도 초점을 맞춰 큰 제목을 「이정희 나가자 당권파 표결 방해, 200명 단상 난동 … 이석기, 근처서 작전 지시」라고 달았다.

기사 내용 중에도 「작전 지시한 이석기」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으나 막상 본문에는 “이석기 당선인은 당초 중앙위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불참했다. 중앙위가 열리기 전 당권파의 사전행사에만 잠깐 얼굴을 내민 그는 중앙위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근처에서 중앙위원들과 계속 연락을 취했다.”는 설명뿐이 당선자가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 당선자가 폭력 사태를 지시한 것처럼 표현한 위 기사 제목은 선부른 추측이나 선입견으로 본문 내용과 다르게 뽑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기사의 공정성, 나아가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06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2년 6월 4일자 4면 「용인 外大는 왜 ‘주사파 성지’ 됐나」 기사

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불거진 통합진보당(진보당) 사태의 중심에 있는 진보당 구당권파의 몸통인 이석기 의원(비례대표), “탈북자는 변절자”라며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주통합당(민주당) 임수경 의원(비례대표) 등은 모두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눈에 띈다. 이른바 이들 ‘외대 용인’ 인맥은 민족해방(NL) 계열 학생운동 출신 가운데 진보당을 장악한 핵심 세력으로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한국외대 등에 따르면 경기동부연합의 실세라는 이석기(82학번·중국어통번역학과) 의원과 임수경(86학번·프랑스어과) 의원, 정형주(84학번·독일어과) 전 민노당 경기도당위원장, 윤원석(86학번·경제학과) 전 민중의소리 대표, 우위영(84학번·서반어어과) 진보당 대변인 등은 모두 외대 용인캠퍼스 출신이다. 정치권에서 “강경 주사파인 경기동부연합 가운데 외대 용인 인맥이 성골”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대 용인’ 출신들의 약진은 어느 정도 역사적 필연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당시 대학의 수도권 분교가 생기기 시작한 초창기라 교통이 불편해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서 통학하기보다 자취나 하숙을 했다. 또 서울에서 밀려났다는 허탈감과 집에서 나왔다는 해방감이 외대 용인캠퍼스의 분위기를 지배했다. 한 졸업생은 “오후 10시만 되면 학교를 오가는 차가 끊겼고,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후배들에게 사상을 ‘학습’시킬 기회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투적 운동권 학생들이 양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소규모 공장이 밀집한 이곳에 대도시에서 밀려난 빈민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도 영향이 컸다. 1980년대 재야인사들이 성남 용인에 들어와 빈민·노동운동을 펼쳤고, 이런 분위기가 외대 용인캠퍼스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경기동부연

합 소속 운동권 학생들은 졸업 후 성남·용인 지역의 열악한 공단과 빈민가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현장 활동을 벌였고, 현재 진보당의 당권파들 역시 대체로 성남·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하면서 커왔다. 운동권 출신들이 학교를 넘어 현장 운동가로 크기에 좋은 배후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탈북 대학생을 상대로 막말 파문을 일으킨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과 경기동부연합 출신 주요 진보 정치인들 가운데 몇몇이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 이유와 배경을 분석한 화제성 해설기사다.

기사는 외대 용인캠퍼스를 졸업한 진보 정치인 5명의 이름과 직책을 열거한 후 『정치권에서 “강경 주사파인 경기동부연합 가운데 외대 용인 인맥이 성골”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적어 이들 5명이 강경 주사파인 것처럼 느끼도록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주장이 바로 이들 5명을 경기동부연합의 주축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나 되거나, 경기동부연합이나 이들 5명을 ‘강경 주사파’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도 『정치권』의 말을 인용했을 뿐 스스로 이들을 ‘강경 주사파’라고 기술하지는 않았다. 리드 부분에 『이른바 이들 ‘외대 용인’ 인맥은 민족해방(NL) 계열 학생운동 출신 가운데 진보당을 장악한 핵심 세력으로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라는 언급이 있으나, 이것 역시 이들 5명을 ‘강경 주사파’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기사 내용에서보다 한발 더 나아가 큰 제목을 「용인 外대는 왜 ‘주사파 성지’ 됐나」라고 달았다.

즉, 제목은 이들 5명이 용인 외대를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용인 외대가 ‘주사파의 성지’가 되었다고 본 것이나, 이같은 등식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제목이 주는 느낌대로라면 외대 용인캠퍼스는 ‘주사파’들이 득실거리는 소

굴처럼 오해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한 것이며, 객관적 근거없이 편견과 선입견을 지나치게 앞세운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26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2012년 8월 10일자 A8면 「조기문, 공천 질문지 빼내 현영희에 전달/10년간 부산 정치권 맴돌아」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기문 전 새누리당 홍보위원장(48)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씨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기문 새누리당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지난 4·11 총선 공천을 앞두고 공천심사위원회 내부 정보를 확보해 이메일을 통해 현 의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조 전 위원장이 그 대가로 현 의원에게서 별도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 출신인 조씨는 2004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당시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있을 때여서 권 전 대사가 대학 후배인 조씨를 채용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 시기 조씨는 부산시장 정책특보로 있던 현기환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 현 전 의원은 조씨를 대학 선배로 알았지만 몇 년 후 5살이나 아래에다 대학 동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심하게 다뤘다고 한다. 조씨는 이후 2010년 현영희 의원이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친해졌고 지난 4·11 총선 때는 홍준표 전 대표 특보 명함을 들고 나타나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처럼 조씨는 지난 10년간 지역 정치판에는 어김없이 등장했다. 하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광고 대행사를 도와준 것 외에 뚜렷한 직업은 없었다고 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른바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에서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의 역할과 정치 경력 등을 소개한 박스기사다.

그런데 편집자는 「조기문, 공천 질문지 빼내 현영희에 전달」이라고 본문에도 없는 내용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기사에는 『검찰은 조기문 새누리당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지난 4·11 총선 공천을 앞두고 공천심사위원회 내부 정보를 확보해 이메일을 통해 현 의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라고 기술돼 있을 뿐이다. '공천심사위 내부 정보'가 '공천 질문지'로 바뀌어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제목이 달린 것이다.

이는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27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주문〉

한겨레 2012년 8월 9일자 12면 「수업 대신에 “할렐루야”/학교는 마치 ‘종교감옥’」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겨레는 위 적시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계 사립 일반고인 서울 명지고는 지난 7월17~19일 3일 동안 학교 체육관에서 ‘신앙 부흥회’를 열었다. 1·2학년 학생 모두가 1~2교시 2시간 동안 수업 대신 학교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진행한 부흥회에 참석해야 했다. 다른 학교에서 온 목사 등이 설교를 하고 관련 영상을 보여줬다. 찬송가도 불렀다. 3교시에는 부흥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썼다. 이 학교 7양은 “차라리 수업하는 게 낫다”며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부흥회에 참여하려니 너무 괴로웠다”고 말했다. 2양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설교 내용이 불편했다”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매일 아침 8시께 교실에서 ‘큐티’를 한다. 큐티는 ‘조용한 시간’(Quiet Time)의 약자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일컫는다. 시간은 5~10분 정도로 짧지만 이 시간에는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떠들어서도 안 된다. 7양은 “학급비로 걷은 돈을 학생들의 동의 없이 현금으로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매주 월요일 1교시에는 ‘예배 수업’을 한다. 학기 초 선생님이 “예배 수업 듣기 싫은 사람 손들라”고 했지만, 손을 들 수 없는 분위기라고 7양은 전했다. 대체 수업도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 7양은 “대체 과목으로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생활과 교육’은 담당 교사가 배정돼 있

지 않고, '생활과 종교'는 대부분 기독교를 찬양하고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특정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 반드시 철학, 교육학 등 대체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학생들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만 명지고 교감은 "우리 학교는 '기독교 이념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홍보하고 입학할 때 서약서도 받는다"며 "전학 가고 싶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전학 보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사실상 '우열반'을 운영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명지고는 입학 전인 지난 2월, 전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두 과목 시험을 치렀다. 이어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뒤, 신청한 학생 가운데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두 반을 선발해 1학년 1반과 18반을 '영어과제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어과제반의 한 학생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신청했고, 학습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나도 신청했다"며 "'영어를 잘하는 반'이다 보니 '공부를 잘하는 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지만, 성적을 고려해 반 편성을 따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적에 따라 반 편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과정 위반 소지가 있어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남택 명지고 교장은 "영과반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외국에서 살다 왔거나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따로 모은 것으로 우열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양은 지난 7월 18일, 종교행사 강제 참여, 우열반, 강제 야자(야간자율학습) 등 학교의 인권침해 사항을 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에 제보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우열반'과 종교행사 강요 문제에 대해선 차일피일 조사를 미뤘으나 <한겨레>가 취재에 나서자 8일 뒤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강제 야자 및 강제 방과후수업 문제만 담당 부서에서 학교 쪽에 서면 질의를 보내 최근 답변을 받은 상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기사는 명지고 재학생인 ㄱ양이 학교의 인권침해 사항이라면서 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에 제보한 내용을 한겨레 기자가 취재, 확인해 쓴 것이다. ㄱ양이 제보한 학교인권침해 사항은 종교행사 강제 참여, 우열반, 강제 야자(야간자율학습) 등이며 한겨레기사는 이중 종교행사 강제참여에 큰 비중을 두었다. 위 기사는 명지고가 주 1회 예배시간을 두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사흘간 2시간씩 부흥회를 했는데 학생들은 이런 행사에 가고 싶지 않아도 사실상 억지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실태를 서술했다. 위 기사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특정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 반드시 철학, 교육학 등 대체 과목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학교에서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 학생 인권조례도 학생들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학교를 ‘종교감옥’이라고 나타낸 제목은 기사 본문 어디에도 없는 내용으로, 과장된 표현이다. 설사 이 학교 학생들 중 상당수가 본의와 달리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사람의 신체 및 표현의 자유를 꺾어버릴 수 없도록 속박하는 ‘감옥’에 학교를 비유한 것은 지나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59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북일보 발행인 변 근 원

〈주문〉

충북일보 2012년 9월 12일자 3면 「불법 부항시술 성행 ... 지역 재력가 사망」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위 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불법 부항시술이 60대 재력가의 목숨을 앗아갔다.

숨진 여성은 청주지역 유명 멀티플렉스 사장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술 자리에는 전임 청주시장 A씨의 부인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66)를 포함한 부유층 부녀자 4명은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청원군 오창읍 한 아파트에 모였다. 고인 피를 뽑아 새 피를 돌게 한다는 이른바 ‘심천사혈부항’을 뜨기 위해서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시술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심천사혈요법 자격증을 지닌 C(여·55)씨의 지도 아래 부녀자 4명은 서로에게 부항을 떴다. 숨진 B씨는 지인 D(여·71)씨에게 시술 받았다. 등과 가슴, 배에 부항을 뜬 B씨는 갑자기 숨을 쉬지 못했고,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유명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던 고인은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졌다.

부검은 12일 진행된다. 시술자 D씨와 시술 지도자 C씨가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불법 시술까지 받았던 것 같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부항시술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에 전국 2만 한의사들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이 기회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불법 부항시술을 받던 여성이 갑자기 숨진 사고를 보도한 기사다.

기사는 『등과 가슴, 배에 부항을 뜬 B씨는 갑자기 숨을 쉬지 못했고,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 부검은 12일 진행된다』고 기술하고, 『경찰 관계자는 “건강해지기 위해 불법 시술까지 받았던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 내용으로 볼 때는 사망자가 불법 부항시술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아직 불법 부항시술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기사는 리드 부분에서 『불법 부항시술이 60대 재력가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단정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기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또 제목에서는 「불법 부항시술 성행 …」이라고 적었으나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

이러한 보도와 편집은 신문 기사의 객관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75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2년 9월 27일자 A12면 「‘性접대’ 구설 도로공사, 이번엔 일감 몰아주기 의혹」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의 공매를 담당하는 aT는 자사의 은퇴자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13년간 독점으로 217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aT가 2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T 출신 인사가 대표이사인 C업체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aT의 농수산물 비축창고 위탁 업무를 독점해 왔다.

C업체의 등기이사와 직원도 aT 출신이 대다수다. 같은 업종에 더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많지만 aT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aT는 C업체와의 위탁계약서에 ‘사무실 무상 지원’까지 명기했다. aT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과적단속 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자사 출신 임원들이 고문으로 있는 업체에 5년 동안 납품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실은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로공사 과적단속 시스템 선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H업체가 과적단속 시스템을 독점 납품해 왔다고 밝혔다. 연간 35억 원 규모다. 이 업체에는 도로공사에서 과적단속 업무를 맡았던 임원 두 명이 고문으로 있다.

성능시험 과정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로공사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유독 H업체에만 성능시험 기회를 더 주거나 아예 성능시험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납품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은 위 기사에서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을 인용,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수의계약이나 입찰특혜를 통해 자사 출신 은퇴자들이 재직 중인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도로공사에 초점을 맞춰 「‘성접대’ 구설 도로공사, 이번엔 일감 몰아주기 의혹」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성접대’와 관련한 내용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확인 결과 도로공사 한 직원이 사고 차량 정보를 몰아준 대가로 고속도로 견인업체 사장 등으로부터 330만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도로공사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고,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위 기사 보도에 앞서 일부 언론에 공개됐었다.

그렇더라도 ‘일감 몰아주기’는 구조적 비리 의혹이고, ‘성접대’는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한 직원의 비리인데도 ‘일감 몰아주기’ 관련 기사에 제목을 달면서 본문 내용에도 없는 ‘성접대’를 덧씌운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또, 東亞日報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게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04 신문윤리강령 위반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주문〉

파이낸셜뉴스 2012년 10월 26일자 18면 「美 정부, 이번에도 ‘애플 편들기」」 제목과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서만 외면을 당하고 있다. 최근 유럽 등지에서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에서 애플이 수세에 몰린 가운데 미국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잇따라 애플쪽 손을 들어주면서 ‘자국 기업 보호주의’ 비판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5일 삼성전자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

ITC 토마스 펜더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번 예비 판정은 지난 해 7월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을 상대로 관세법 377조 위반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관세법 377조는 미국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다. 토마스 펜더 판사가 삼성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들은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 1건과 터치스크린 기술 등 기능특허 3건이다. 디자인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에 평평한 전면부를 담은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이다. 기능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기와 방법, 그래픽 사용자 환경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 ▲이어폰의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 방법이다. 다만 토마스 펜더 판사는 애플이 주장한 나머지 외관 디자인 등 2건의 특허들은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달에는 ITC가 삼성이 특허 침해를 제소한 사건에서도 애플의 비침해를 인정하는 예비 판정이 나왔다. 당시 ITC 제임스 길디 행정판사는 “애플이 데이터 변환, 음악 데이터 저장 등의 삼성 통신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내 불공정 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인 ITC가 잇따라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애플 지키기’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더욱이 애플이 최근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본안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연패하면서 특허 횡포에 대한 ‘반애플’ 정서가 해외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라 ITC의 판정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예비 판정이 당장 삼성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 삼성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여부는 내년 2월25일까지 ITC 전체 위원회의 최종 판정에서 결론난다. 만약 ITC 최종 판정에서도 삼성이 패하더라도 최종 수입 금지는 미국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예비판정에 대해 ITC에 즉각 재심사를 요청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미국내 불공정 수입 제품 규제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 ITC의 토

마스 펜더 판사가 삼성전자에게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 사실을 다루었다.

그런데 위 기사는 ‘미 정부 이번에도 애플 편들기’라는 제목을 달았으나 기사 본문에는 그러한 표현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다만, ▲토마스 펜더 판사가 애플이 주장한 나머지 외관 디자인 등 2건의 특허들은 비침해 판정을 내렸고 ▲지난 달 ITC가 삼성이 특허 침해를 제소한 사건에서도 애플의 비침해를 인정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판정에 대한 배경설명을 곁들였다.

또 ▲ITC가 잇따라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애플 지키기’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애플이 최근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본안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연패하면서 특허 횡포에 대한 ‘반애플’ 정서가 해외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라 ITC의 판정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ITC의 이번 판정이 왜 ‘애플 편들기’인지, 또 이번 판정이 왜 ‘이번에도’라는 지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동일한 내용의 제소건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판정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측 기업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판정이 나왔다면 기사 본문을 통해 사실관계나 분명한 논리적 근거로 ‘ITC의 애플 편들기’를 입증해야 한다.

위 기사는 본문에서 ‘편들기’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기사 본문에도 없는 표현을 동원, 불공정하고 감정적인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27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 문〉

서울경제 2012년 11월 29일자 1면 「포폴리즘 법안이 일자리 빼앗아갔다/롯데 등 대형 유통사 규제로 실적 나빠져 내년 채용 대폭 축소/최악 고용 한파 예고」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형 유통업체의 고용시장이 퐁퐁 얼어붙었다.

잇단 포폴리즘 법안에 따른 영업규제 강화로 실적이 악화되는데다 내년도 사업전망마저 불투명해지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내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채용규모를 대폭 줄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규제에 따른 실적부진이 대형마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내년에 최악의 고용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구체적인 내년 채용인원과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채용 윤곽만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다. 홈플러스는 내년에 대졸 신입사원을 27명가량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78명)보다 70%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지난해와 같은 10명에 그쳤다. 경력직 채용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롯데슈퍼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가 내년 채용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올해 경기불황이 지속되는데다 영업규제로 매출이 심각하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올 들어 대형마트업계는 3월(3.2%)과 9월(0.2%)에 소폭 신장한 것을 제외하면 매출이 8개월 동안 평균 4.8%가량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래시장 인근 1km 이내 신규출점 제한 조치로 외형을 키우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더욱이 내년에도 영업규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보다 사업전망이 더 불투명하다는 점도 업계의 채용계획에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오후10시~오전10시로 4시간 더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월 3회로 늘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업계는 영업시간을 자정~오전10시로 제한하고 월 2회 휴무를 강제하는 현행 유통법이 시행된 후 이미 고용시장이 악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11년 대형마트 빅3는 캐셔(계산원)와 파트타임직을 제외하고 2,458개의 정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올해는 1,020개로 일자리가 58%나 급감했다.(중략)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올해 강제휴업으로 인력채용이 최소화되면서 지난해 대비 채용인원 감소가 불가피했다”면서 “내년에도 규제변수로 경영계획을 세우지 못해 채용전망이 어둡다”고 말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1면 톱으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잇단 포퓰리즘 법안에 따른 영업규제 강화로 실적이 악화되는데다 내년도 사업전망마저 불투명해지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계가 내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채용규모를 대폭 줄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기사가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목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돼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은 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해당 업계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해당사자들 중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으로 고사위기에 몰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개정되고 있다.

그리고 기사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형유통업체가 내년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올해 경기불황이 지속된』탓도 크다.

그런데도 서울경제는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포플리즘 법안이 일자리 빼앗아갔다」고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포플리즘 법안이고 그 법만 아니었다면 유통업체 일자리 감소도 없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기자나 편집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맞춰 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31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문〉

내일신문 2012년 11월 21일자 8면 「실종된 MB 위상」 사진의 설명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내일신문은 아래 적시 사진을 게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진설명을 달았다.

『20일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를 보도한 AFP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로 긴장관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진을 타전했다. 가운데 웃음짓고 있는 이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설명은 생

략됐다.』



실종된 MB 위상 20일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를 보도한 AFP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로 긴장관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진을 타전했다. 가운데 웃음짓고 있는 이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설명은 생략됐다. AFP=연합뉴스

〈내일신문 2012년 11월 21일자 8면〉

2. 위 사진 설명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은 지난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대화를 나누며 걷어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사진설명 제목을 「실종된 MB 위상」이라고 달았다. 제목을 이처럼 단 이유는 위 사진설명에 기술돼 있는 것처럼 이 사진을 타전한 AFP통신이 미국과 중국 정상에 대해 소개하면서도 『가운데 웃음짓고 있는 이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설명은 생략됐다』는 이유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로 긴장 관계를 보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에게

초점을 맞춘 사진에서 뒤쪽 중앙에 우연히 모습이 잡힌 이 대통령에 대해 외국 통신사가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것을 빌미 삼아 「실종된 MB 위상」이라고 제목을 단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인 편하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4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2. 全北日報 발행인 서 창 훈

〈주문〉

전북도민일보 2012년 11월 23일자 9면 「익산지역 중·고교생 절반 '아침 굶는다」와 12월 5일자 1면 「부영, 프로야구 10구단주 확정」 기사의 제목, 全北日報 11월 23일자 8면 「익산 중·고생 절반 아침 굶어」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전북도민일보, 全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북도민일보)〈익산지역 중·고교생 절반...〉= 『익산지역 중·고교생 10명 가운데 4.9명이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김연근 전북도의원(익산4·교육위원회)이 익산지역 중·고교생 439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분석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기숙사에 있는 학생을 제외한 통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 의원이 조사조사결과 중·고교생 439명 가운데 48.9%인 216명이 과중한 학업과 이른 등교 등으로 아침 식사를 거른 채 등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본인이나 친구들이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81%(350명)의 '학생이 잠이 부족해 등교시간에 쫓겨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식사를 하지 않고 등교하는 경우 '집중력이나 사고력이 현저하게, 혹은 대체로 떨어진다'고 응답한 학생이 64.3%(280명)에 달했다. 학교에서 아침 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선 56.2%(242명)의 학생들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전라북도 소재 중·고교생의 아침식사 후 등교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50%이상이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한 두 숟가락 뜨고 등교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439명 중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은 30.3%, 한두 숟가락 떠다는 학생은 19%로 나타났다.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한 두 숟가락 뜨고 등교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학생의 50.4%, 중학생은 47.7%에 달했다.(후략)』

〈부영, 프로야구 10구단주 확정〉= 『국내 재계 순위 30위인 부영 그룹(회장 이종근)이 전북을 연고로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프로야구 제10구단 구단주로 확정됐다. 그동안 10구단 구단주 영입에 고심해 온 전북도가 '수원-KT'에 필적할 만한 히든 카드를 확정함에 따라 10구단 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와 프로야구 제10구단 범도민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이연택)는 김완주 지사와 이연택 위원장, 송하진 전주시장, 임병찬 전북도민일보 사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회의를 열고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연고로 한 프로야구 10구단 구단주로 부영그룹 영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는 사실상 국민 기업과 다름없는 KT가 프로야구 10구단 창단과 관련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편향된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향후 적극적인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12·16면

전북을 연고로 하는 10구단 구단주로 영입된 부영그룹은 국내 재계 순위

30위로 자산 규모가 12조5천438억원에 비금융회사 16개와 금융회사 1개 등 총 17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연간 매출액 규모가 5천195억여원에 달하며 당기 순이익도 3천881억5천여 만원에 달하는 우량 기업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부영그룹은 조만간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창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연택 위원장은 이날 “전북에 연고를 둔 기업 중 KBO가 요구하는 구단주 자격 기준에 부합되고 기존 구단들과의 융합성 등을 고려한 결과 컨소시엄 형태 보다는 재정 능력이 충분한 단일 기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중론이었다”면서 “부영그룹의 경우 구단 운영 능력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무주리조트 인수는 물론 전북 지역 학교에 다양한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 연구 10구단 구단주로 적합하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도 “새특법 이후도내 가장 큰 현안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다”며 “그동안 이 위원장과 유치위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창단 기업 영입이라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고 말했다.』

(奎北日報)= 『익산지역 중·고교생 절반이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 교육위원회·사진)에 따르면 익산지역 중·고교생 439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후 등교여부를 묻는 실태 조사에서 50%에 이르는 학생들이 과중한 학업과 이른 등교 등을 이유로 식사를 거른 채 등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사를 하지 않고 등교할 경우 집중력이나 사고력이 현저하게, 혹은 대체로 떨어진다고 응답했고, 학교에서 아침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56.0%의 학생들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현재 기숙사에 있는 학생을 제외한 통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50%이상이 식사를 하

지 못하거나 한 두 손가락 뜨고 등교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439명중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은 30.3%, 한두 손가락 뜬다는 학생은 19%로 나타났다.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한 두 손가락 뜨고 등교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학생의 50.4%, 중학생은 47.7%에 달했다. 이어 일주일에 며칠 식사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주 3일 이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66.8%에 이르고 있다.(후략)』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도민일보, 全北日報의 위 익산 중·고교생 기사는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이 익산 지역 중·고교생 439명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등교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각각 인용한 보도다.

두 신문은 각각 기사 첫 문장에서 익산지역 중·고생 10명 가운데 4.9명이 아침을 거르거나 절반이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와 달리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30.3%, 한두 손가락 뜬다는 학생이 19%라는 상세한 조사 결과가 인용돼 있다.

한두 손가락 뜨는 것과 굶는 것은 엄연히 다르고, 따라서 아침을 실제로 굶는 학생은 30.3%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게다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기숙사 학생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로 아침을 굶는 학생의 비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도 두 신문은 마치 익산 지역의 전체 중·고생 절반이 아침을 굶는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제목을 달았다.

전북도민일보의 부영 기사는 재계 순위 30위인 부영 그룹이 전북을 연고로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프로야구 제10구단 구단주로 확정됐다는 내용과 함께 그 배경을 전하고 있다.

프로야구 제10구단은 경기도 수원시도 KT와 손잡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야구위원회가 창단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전북-부영’은 ‘수원-KT’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최종 후보로 선정된다. 즉 전북이 부영 그룹을 구단주로 영입한 것은 향후 전개될 유치전에 대비한 준비 과정일 뿐이지 제10

구단 구단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신문은 마치 부영이 제10구단주로 확정된 것으로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제목을 달았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0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4.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주문〉

매일경제 2013년 1월 1일자 A5면 「택시법 전격 통과 … 대중교통으로 인정/ 환승할인·소득공제 … 최소 1조 9천억 소요」 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1월 1일자 5면 「“떼쓰면 통한다” 또 포퓰리즘 … 2조이상 혈세 쏟아부을 판/택시 통행료 인하 등에 1조 9천억 지원/버스 달래기에도 2,600억 재원 필요」 기사와 제목, 한국경제 1월 1일자 A5면 「‘포퓰리즘의 재앙’ … 택시법에 혈세2조」 기사와 제목, 국민일보 1월 4일자 1면 「반발 큰 택시법 … “거부권” 여론 고조/2조 투입 ‘포퓰리즘 법안’ 지적 … 정부,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기사와 제목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일경제)= 『정치권이 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택시도 버스·지하

철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앞으로 최대 약 1조9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편입되면 우선 최소 1조원가량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버스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환승할인부터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손실 보전, 소득공제, 차량 구입비 지원 등이 택시업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대선 전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원(약 9000억원)까지 합하면 총 1조9000억원 규모가 된다.

새누리당은 유가보조금 지원(4300억원),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90% 경감(1800억원), LPG 개별소비세 면제 및 할당관세 적용 연장(2100억원), 감차 보상(170억원) 등의 면세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서울시에서 버스환승할인에 소요된 세금만 약 2215억원에 달한다. 택시는 기본요금 자체가 버스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환승할인 적용 시 투입해야 할 재정 지원은 최소 2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6대 도시에서 버스업계 손실 보전에 쏟아붓는 세금도 약 5038억원(환승할인 포함)에 이른다.

현재 약 29만명에 달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임금을 준공영제를 통해 보전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 역시 버스업계보다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버스요금보다 금액이 훨씬 큰 택시요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수천억 원대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추산이다.

서울시가 CNG버스나 저상버스 구매 시 대당 1850만원을 지원해주는 차량 구입비도 향후 택시에 지원될 수 있다.

이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에다 통행료 인하 등을 적용하면 최소 연간 1조원의 세금이 택시업계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 규모로 추산한 예산이 1조원으로 향후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택시업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지만 택시 서비스의 질이 과연 얼마나 향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질적인 승차 거부와 과속·난폭 운전, 택시 운전자의 범죄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업계 자구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방안만 쏟아지고 있어서다.

택시법 통과에 따른 버스업계 반발을 잠재우는 데에도 약 2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이 버스업계와 만나 유류세 지원, 통행료 인하, 버스요금 인상 등 버스업계 3대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일부터 부산·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타 지자체도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데다 버스요금까지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택시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개월 이상 끌어온 정치권·정부·택시·버스의 ‘4각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집단행동을 무기로 한 특정 업계의 떼쓰기에 정치권이 굴복한 또 하나의 표플리즘 사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택시 업계는 6월 하루 동안의 운행 중단을 강행한 후 줄곧 ‘대중교통 법제화’ 외에는 어떤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금까지 현행법이 정의하는 대중교통은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이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범위에 택시가 포함되면서 택시 업계 역시 버스와 마찬가지로 영업 손실 보전을 위한 ‘준(準) 공영제’ 혜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손실 보전 외에 ▲환승 할인 지원 ▲통행료 인하 ▲공영차고지 지원 등에 1조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밖에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유가 보조금, 감차 보상비, 세금 경감까지 포함하면

9,2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법인 택시 기준으로 현재 160만원이 채 안 되는 운수종사자의 월 평균 급여가 2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택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택시 업계의 대중교통 법제화 주장에 정부는 초지일관 반대 입장으로 맞서며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과잉공급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국토부 측은 정치권과 택시 업계를 설득해 내년 6월까지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었으나 택시법이 통과되면서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법 갈등이 촉발된 더 큰 문제는 법안 통과 움직임에 버스 업계가 전면 운행 중단을 경고하며 들고 일어나자 정치권이 덜컥 2,600억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버스 업계를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유류세 100% 면제 ▲통행료 인하 ▲요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버스 업계는 현재 유류세의 70%(리터당 380원) 수준을 지원 받고 있으며 이는 연간 3,500억원 규모다. 100%를 면제해줄 경우 연간 1,8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통행료 면제 등에도 연간 8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가 추정하는 택시·버스 양 업계를 위한 지원 규모와 정치권 공약까지 합치면 택시법 통과 때문에 2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털어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요구사항과 법 개정안을 토대로 예산이 결정되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려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새누리당이 “출퇴근 시간 외의 시내 일부 구간과 출퇴근 시간 일부의 고속도로에서 택시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지만 버스 업계의 반발이 크자 택시 업계는 “그런 공약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발을 뺐다.

이번 택시법 통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현

재 택시 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질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성낙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실장은 “가장 큰 문제인 과잉공급 부분을 외면한 채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중교통 법제화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해결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거를 앞두고 떼쓰기를 통해 직역(職域) 이기주의를 관철시킨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국경제)= 『여야가 3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간주해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자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합의함에 따라 2조원이 넘는 혈세가 택시와 버스업계에 투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버스 등에 제공해 왔던 대중교통 환승 할인,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공영차고지 및 차량 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택시업계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재정 소요액만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새누리당이 추가로 공약한 유가보조금 지원(4300억원),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90% 감면(1800억원), 액화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 면제 및 할당관세 연장(2100억원), 감차 보상(170억원) 등에도 약 9000억원이 들어간다.

아울러 정치권의 택시법 처리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유류세 100% 지원(1800억원)이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800억원) 등 각종 민원성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세 부담은 2조1000억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택시법 개정에 따른 주된 수혜 대상이 생활고를 겪는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회사로 돼 있는 데다 택시가 과연 대중교통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한 교통 전문가는 “여야가 택시법을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왜 택시가 대중교통이 돼야 하는지 타당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택시법 개정으로 교통 편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국민에게 설명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택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마련했던 택시업계 지원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LPG에만 부여하던 유류세 감면 혜택을 디젤을 비롯한 다른 연료에도 주는 ‘연료다원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는 버스, 지하철과는 그 기능이 근본적으로 달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택시법이 통과되면 과잉공급 해소, 요금 현실화를 제외한 (국토부가 추진했던) 다른 지원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 반발했던 버스업계 측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정치적 요구를 하는 게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파업은 일단 철회했지만 정부 전문가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택시법을 굳이 왜 통과시키려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택시법보다 (국토부가 추진했던)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정부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이 어려운데다 복지 예산도 부족한데 매년 1조9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택시업계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정부 재정 지원이 택시 근로자 처우 개선보다 택시업자들의 이익만 키울 수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법안 시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택시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이 공포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 대통령이 퇴임 전에 헌법상 부여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나 지하철·기차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정치권이 대선과정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처리한 ‘포퓰리즘 법안’이

라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도 택시법이 조만간 국무회의로 넘어오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통전문가들은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택시업계에 대한 중장기 지원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 재정으로 땀질식 처방에 나서는 것보다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안기정 박사는 “택시법은 어떻게든 재정지원을 더 받겠다는 택시업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법안”이라며 “감차, 요금현실화 등을 통해 왜곡된 택시업계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민 여론에 비춰볼 때 택시법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택시법을 처리했지만 여론의 반대가 심하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굳이 택시법을 다시 통과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지난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다. 위 신문들은 택시법 통과로 인해 택시가 대중 교통으로 편입하면 택시업계에 국민세금을 1조 9천억원, 또는 2조원 넘게 투입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 신문은 앞으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편입하면 현재 버스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환승할인부터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손실 보전, 소득공제, 차량 구입비 지원 등이 택시업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조원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정치권이 대선 전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원(약 9000억원)까지 합하면 총 1조 9000억원(또는 2조 1천억원) 규모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위 신문들이 택시법 통과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규모 1조 9천억원, 또는 2조 1천억원이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에서 추정할 수 있는 최

대치일 뿐이며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또는 여야가 공약했다는 내용도 말 그대로 실현될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신문 기사들이 추산한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정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신문 중 서울경제, 한국경제, 국민일보는 기사 본문을 통해 택시법통과에 따른 재정 지출액수를 단정적으로 못 박고 있다. 서울경제는 『(전략) 택시법 통과 때문에 2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털어야 하는 셈이다』라고 서술했고 한국경제는 『(전략) 2조원이 넘는 혈세가 택시와 버스업계에 투입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또 국민일보는 『(전략)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다 복지 예산도 부족한데 매년 1조9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택시업계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냐는(후략)』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위 4개 신문은 모두 제목을 본문내용보다 훨씬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사실을 과장·왜곡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주제를 통해 「… 최소 1조9천억 소요」라고 표현했으나 막상 해당하는 본문 내용을 보면 『… 택시업계는 앞으로 최대 약 1조9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돼있다.

또 서울경제의 제목은 「“떼쓰면 통한다” 또 포퓰리즘 … 2조이상 혈세 쏟아 부을 판」, 한국경제 제목은 「‘포퓰리즘의 재앙’ … 택시법에 혈세2조」, 「‘포퓰리즘의 재앙’… 택시법에 혈세2조」, 국민일보 제목은 「반발 큰 택시법 … “거부권” 여론 고조/2조투입 ‘포퓰리즘 법안’ 지적 … 정부, 대통령에 건의키로」 등이다.

이같은 제목들은 모두 기사본문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정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이러한 신문보도는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신문보도의 1차적 윤리를 무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기 쉬우므로 매일경제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과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서울경제·한국경제·국민일보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04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경향신문 2013년 1월 10일자 11면 「문용린 첫 인사, 무원칙·영남라인 독주 ‘후폭풍’/보수 노조도 “아직도 전근대적인 감감이 인사” 성명」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이 뒤숭숭하다. 문용린 교육감(65·사진)이 취임한 후 실시한 첫 인사가 “규정과 엇가고 특정 지역의 독주”라는 후폭풍에 휩싸인 것이다. 교육청이 지난 1일 5급 이상, 4월 6급 이하를 상대로 한 인사를 두고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얼굴을 붉히고 있다.

조채구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2일 예고 없이 고척도서관 행정지원담당으로 발령받고 다음날 오전 부교육감실로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이 만든 올해 상반기 인사계획안에는 6급 이하의 2년 미만 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임토록 했다. 조 위원장은 교육청에서 근무한 지 1년 6개월째였다. 조 위원장이 강하게 항의한 3일 오후에 교육청은 뒤늦게 교육연수원으로 발령한다는 정정인사발령을 냈다.

이처럼 기획조정실장도 서울시교육청에 부임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교체됐다. 기획·예산 등을 총괄하면서 업무 파악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자리이기에 새 교육감 취임 후 바로 교체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

방의 학생교육원에 격지 근무를 하던 ㄱ씨도 인사 관행을 비켜갔다. 통상적으로 격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차기 전보 시에 본인 희망을 최대한 감안해줬지만 이번 인사에서 희망하지 않았던 곳에 발령받은 것이다.

회전문 인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소위 교육청 '3대 실세'라고 불리는 사학·예산·인사 담당 부서에서 한 차례 근무했던 직원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요직에 등용되는 일이 지목된 것이다. 인사 관련 부서의 ㄴ주무관은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비서실로 자리를 옮겼다. 통상적으로 사무관이 되면 지역청으로 발령받았지만 예외적인 인사가 난 것이다.

인사 뒷말이 많아지면서 교육청에서는 영남 인사 몇 명이 인사라인을 잡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비서실장과 총무팀장, 인사팀장, 인사팀의 주무주사 2명이 모두 영남 출신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사라인에는 어느 정도 지역이 분배됐었는데 역사상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교육감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간부들이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 비판에는 진보적·보수적 내부 단체가 모두 나서고 있다.

신상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장은 “이번 인사는 보직 순환과 인사 주기를 지키지 않았고 예측도 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인사로 혼란을 줬다”며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기된 발탁 인사(드래프트제)가 여기 저기서 부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성향 노조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서일노)는 지난 7일 “본청 인사발령이 너무 늦게 발표돼 인사발령을 받는 대상자나 지역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상시 대기만 하고 있는 등의 불만이 노조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시스템이 아직도 전근대적인 깜깜이 인사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점희 서일노 위원장은 “올해는 교육감이 바뀌는 등 특수한 사정들이 있었지만 직원들이 자기가 발령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인사가 나긴 하는지 여부를 전혀 몰라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위 기사에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1월초에 단행한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인사가 『“규정과 엇가고 특정지역의 독주”라는 후폭풍』에 휩싸였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원칙과 관행에 어긋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영남지역 출신들이 인사라인을 장악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제목도 이 같은 기사내용에 맞춰 「문용린 첫 인사, 무원칙·영남라인 독주 ‘후폭풍’」이라고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달았다.

기사는 특히 ‘영남라인 독주’에 대해서는 『비서실장과 총무팀장, 인사팀장, 인사팀의 주무 주사 2명이 모두 영남 출신』이라고 그 이유를 적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인사라인에서 인사팀장은 영남이 아니라 충청도 출신이고, 바로 위 총무과장은 강원도 출신이며 새로 부임한 기획조정실장은 전북 출신』이라고 밝혔다. 기사의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기사에 적시된 ‘보수 성향’ 노조의 성명에도 인사의 지역편중에 대한 지적은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실인 양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경향신문은 또 사안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용린 교육감 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확인),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48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주문〉

중부일보 2013년 1월 25일자 1면 「판교 파스퇴르, 2천억 ‘먹튀’」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기도와 정부가 지난 10년간 2천억원을 연구비 등을 지원한 성남 판교의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연구소)가 ‘먹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유치 당시 약속했던 지원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해줄 것인지를 결정해줘야 하는데 당초 파스퇴르 측이 제시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서다.

24일 중부일보가 단독 입수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2단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연구 성과가 60점을 약간 상회하는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은 2010년 정부의 의뢰로 연구소를 평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연구재단(NRF)은 평가 종합의견에서 “연구소가 성공적으로 확립된 기술을 신약개발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체계를 확보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질병모델을 확립, 보다 계획성과 추진력을 가진 운영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체 신약개발 프로젝트로 좋으나 다른 대학교 및 출연 연구기관, 국내 제약업계 연구소로부터 임상실험 참여자를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신약개발, 임상적 성공여부, 향후 시장성 규모 등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 또는 현재 임상전문의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가 부족하며, 향후 영입할 우수 연구인력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소 측이 신약 개발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설립목적중 하나였던 산학연계 및 국내 연구진과의 교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당시 연구소 측의 결핵 치료 신약 개발 지원이 끝나는 올해 까지 상용화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고, 실제 연구소 측은 상용화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한불(한국·프랑스) 전문가에 평가를 의뢰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의 평가와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면서 “10년은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정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변종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결핵신약도 개발했다”면서 “세계보건기구의 세계4대 신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정부는 이 연구소에 판교 연구소 등을 지어주는 등 200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천6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505억원을 들여 연구소 건물을 신축해줬고, 10년간 매년 30~40억원씩 모두 249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상반되지만 당초 연구소 측이 약속했던 자립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성남 판교의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난 10년간 정부로부터 2천억원을 연구비 등으로 지원받고도 약속했던 ‘신약’의 상용화에 실패해 결국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 정부의 의뢰를 받아 2010년에 실시한 이 연구소의 2단계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기사에 따르면 재단이 매긴 이 연구소의 연구 성과는 60점을 약간 상회하는 ‘미흡’이다. 이의 근거로 재단은 임상전문의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가 부족하고, 신약 개발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설립목적 중 하나인 산학연계 및 국내 연구진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우선 이 기사는 근 3년전에 이뤄진 조사결과를 근거로 작성되어 기사의 시

의성, 적절성, 객관성 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 재단은 평가 종합의견에서 『연구소가 성공적으로 확립된 기술을 신약개발에 공유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연구소의 기술력을 나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연구소 측 역시 자체적으로 한국과 프랑스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한 결과 최고의 평가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자체개발한 결핵신약인 경우 세계보건기구의 세계 4대 신약으로 선정됐다고 연구소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큰 제목을 「판교 파스퇴르, 2천억 ‘떡튀’」로 단정적으로 달았다. 편집자는 기사 리드부분의 『연구소가 ‘떡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술을 토대로 이러한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이나, 이 기술 자체가 객관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주관적인 판단인데다 ‘떡튀’와 ‘떡튀 논란’은 그 뉘앙스가 크게 다르다.

따라서 이 제목은 과장 왜곡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68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주문〉

국민일보 2013년 3월 5일자 1면 「고질적 정치 난맥 ‘미래 인재’ 내쫓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장기 표류로 국정운영이

마비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신설 핵심 부처 수장이 물러나는 대형 악재마저 터졌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은 새 정부 내각 후보자의 두 번째 자진사퇴다. “정치권의 ‘치킨게임’으로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는 한탄과 “인사청문회에 부담을 느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뒤섞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 및 여야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졌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국무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새 정부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새 정부에서 미래부가 갖는 위상이 특별한 만큼 그 파장도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올 초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미래부를 신설해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국 알카텔 루슨트 최고전략책임자이자 ‘아메리칸 드림의 아이콘’인 김 후보자를 자신의 구상을 구현할 책임자로 봤다.

새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추가적인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제가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혹독한 인사청문회에 부담을 느껴 사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통합당은 미 중앙정보국(CIA) 근무 경력 및 이중국적 논란, 거액의 재산 축적을 둘러싼 의혹 등을 적극 제기해 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종훈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밝힌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기사를 보면 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사퇴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빚은 갈등’을 들었다. 즉, 그는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종훈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정치난맥상’이 그의 진정한 사퇴 이유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래서 당시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 항간에서는 그의 발언내용과는 다른 많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 근무경력이나 이중국적에 대한 논란 등 혹독한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본인의 이력 때문이라는 시각도 많았다.

위 기사의 본문에서 『“정치권의 ‘치킨 게임’으로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는 한탄과 “인사청문회에 부담을 느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뒤섞여 있다』고 기술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기사 제목은 정치난맥을 닮하는 한쪽 면만 단정적으로 부각해 「고질적 정치난맥 ‘미래 인재’ 내쫓다」라고 표현했다. 이는 편집자의 주관적인 편견이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기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81 신문윤리강령 위반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영권

〈주문〉

파이낸셜뉴스 2013년 3월 11일자 4면 「中 언론들은 “한반도 전쟁 초읽기”/ 국지전 등 가능성 제시/대치국면 상세히 보도」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언론매체들은 11일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위협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상세히 보도했다.

중국신문망은 이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를 인용, 평안남도, 자강도, 함경북도 등지에서 지난 9일 열린 군민대회에서 미국이 강행하는 ‘반북 적대행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맞서 전 군민이 최후의 승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맞서 북한군은 11, 12일 이틀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육해공 및 특수전 부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기동훈련이 진행된다고 전문가들은 북측이 또 다른 도발성명을 내게 된다면 국지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하지만 북한은 이번 북측을 향한 고강도 군사위협이 과거처럼 소리만 요란하고 실질적 행동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현안 전문매체인 환구시보는 이날 ‘한반도 전쟁돌입 초읽기’란 제목으로 남북간 대치국면을 극한 긴장감을 실어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장 양제츠는 9일 가진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한반도 사태가 중국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다”고 공박했다.

하지만 양 부장은 관련 당사국들이 냉정하게 자제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6자회담을 통한 사태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양 부장은 또 “대북제재가 안보리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사태의 근본 해결책도 아니다”라며 전란을 막고 평화안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또한 공동책임이라고 밝혔다.

양 부장의 입장은 과거 북핵사태에서 보여준 중국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전위성TV는 중국 정부가 한반도 안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것

을 염두에 둔 갖가지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류밍 상하이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의 말을 인용, 이날 보도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묶은 베이징 특파원발 기사다.

그런데 편집자는 「중 언론들은 “한반도 전쟁 초읽기”」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중국 언론 다수가 한반도에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위기감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사 본문을 보면 환구시보만 『‘한반도 전쟁돌입 초읽기’』라는 제목으로 남북간 대치국면을 보도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신문의 표제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다른 기사들은 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kpec.or.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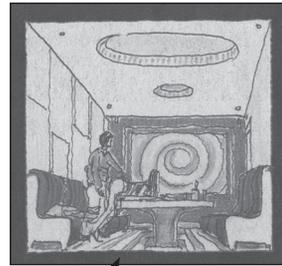
2.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 2013-1034 신문윤리강령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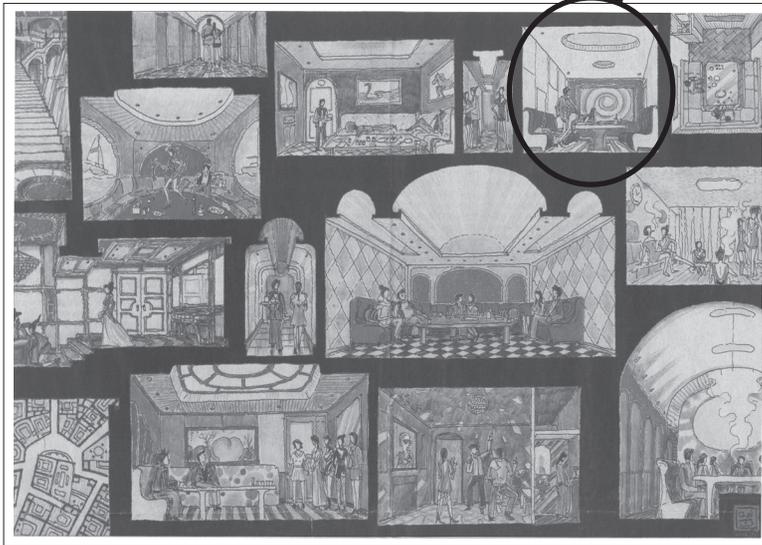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경향신문 2013년 2월 2일자 24면 「‘성·권력의 지하 판타지’ 그 속에 은폐된 소외와 외로움을 보다/건축과 삶/Ⅱ-4. 룸살롱-욕망이 춤추는 지하도시」 제목의 기사 관련 삽화 1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경향신문 2013년 2월 2일자 24면〉

위 그림은 경향신문의 기획 시리즈물 ‘건축과 삶’중 ‘Ⅱ-4. 룸살롱-욕망이

춤추는 지하도시'라는 기사의 관련 삽화 중 하나다. 제시된 그림은 룸살롱 안에서 두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 모두 하의를 벗은 가운데 여성은 테이블위에 상반신을 엮드리고 있으며 남성은 여성의 뒤편에서 자신의 성기를 여성에게 삽입하고 있다.

이 기사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어린이까지 볼 수 있는 일간지에 이처럼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다룬 그림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그림은 동기나 의도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독자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왜곡된 사회관과 성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미확인 사실 과대편집 금지

▲ 2012-1104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주문〉

한겨레 2012년 6월 18일자 11면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씨와 이혼결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태원(52)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부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

(51)씨와 최근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최 회장을 잘 아는 인사들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노소영씨와 별거 상태에 있는데 최근 이혼 결심을 굳히고 이 사실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렸다.

최 회장과 노씨는 미국 시카고대학 유학 시절에 만나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88년에 결혼했으며, 대통령 딸과 재벌가 아들의 혼인이란 점에서 화제를 뿌렸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얘기가 간간히 소문으로 돌곤 했다. 노소영씨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과 매우 가까운 한 인사는 “최 회장이 최근 사석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매우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그룹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주변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했으며, 그가 최근 에스케이하이닉스는 물론 해외 현장경영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도 최근의 개인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 출장중인 최 회장은 귀국하는 대로 노씨에게 이혼하자는 뜻을 공식 전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가까운 인사들에 따르면, 두 사람 관계는 에스케이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9월부터 급격히 악화됐다. 최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도 노소영씨가 최 회장을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바깥에서 남편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한다는 사실을 최 회장이 전해들었다고 한다. 최 회장을 잘 아는 인사들은 “검찰 수사로 최 회장이 예민해져 있을 무렵, 노씨가 내조는 고사하고 이와 관련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최 회장이 듣게 됐다. 재판에 임하던 최 회장은 큰 충격을 받고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인사는 “최 회장은 이미 7~8년 전부터 노씨와의 성격 차이로 결혼생활을 매우 힘들어했으며 그 무렵 한때 노씨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고통을 겪기도 했다. 다만, 그룹 경영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참아왔다. 결국 부부간 신뢰가 상실된 정략 결혼의 비극적 결말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는 두 사람의 이혼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노소영씨에게 접촉을 시도했지

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의 위 사회면 머리기사는 최태원 SK 그룹회장이 부인 노소영씨와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소식을 익명의 취재원들에게 전해듣고 작성한 것이다.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취재원들은 『최회장과 매우 가까운 한 인사』 『최회장과 가까운 인사들』 『한 인사』 등이다.

보도기사에서 취재원이 익명이라면 실명인 경우보다 사실성,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취재원은 실명표기가 원칙이다.

물론 실명표기 원칙에도 예외적 상황이 있고 이에 대해서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재벌기업 경영자라면 중요한 공인이다. 따라서 이같이 중요한 공인의 이혼이라면 매우 예민한 소식이고, 이를 기자에게 전하는 취재원들도 익명을 요구했음직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이란 중대한 사생활 문제로, 당사자들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나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발표를 하기 전에는 진위를 알기 어렵다.

한겨레는 위 기사에서 익명 취재원의 발언내용을 바탕으로 기사화하면서 해당 면 머리기사로 크게 다루고 인용부호도 없이 「최태원 SK회장, 노소영씨와 이혼결심」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당사자들이나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밝히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이혼결심’을 주변인들의 말만 듣고 양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를 확정된 사실인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다.

또 취재원에게서 들은 이야기만으로 ‘이혼’에 관한 당사자들의 속마음을 지레 단정한 것은 ‘사실’과 ‘의견’(짐작)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SK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과 대편집 금지), 제12조 「사생활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76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2년 10월 12일자 10면 「“정규직 전환” 性추문 휩싸인 공직사회」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단초가 돼 공직사회가 성상납과 금품 수수 추문에 휩싸였다.

성상납 요구를 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한 서울 용산구청의 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성상납과 금품 수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의 구청 공무원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불쌍사나운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감사를 벌인 서울시는 “현재는 여성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상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사정기관에 고소해야 한다”며 사실상 손을 댔다.

12일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용산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원(시간제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A(여) 씨는 지난 9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재계약과 정규직으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 씨와 C 씨, 구청 비서실장인 D 씨가 성상납 및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40대 기혼여성인 A 씨는 “비정규직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B 씨가 ‘재계약과 정규직 전환을 시켜 주겠다’며 ‘성관계와 함께 150만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 씨를 통해 소개받은 용산구청 비서실장 C 씨에겐 재계약 대가로 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0만원을 상납했고, 또 다른 구청 직원인 C 씨에게는 강제적으로 모텔에 끌려갔다”고도 털어놨다. A 씨는 2011년 3월부터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일해왔으며 최근 동료와 다툼 중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지목된 공무원들은 “A 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분개했다. B 씨는 “정규직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 씨 역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무고죄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C 씨는 “함께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가 아닌 쌍방향 합의에 의해 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진행한 서울시 감사관 측은 “지난 9월 20일께 민원이 접수돼 당사자 4명과 A 씨의 주차단속원 동료 20여명을 소환조사했지만 성상납과 금품 수수는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CCTV 확보 및 통화 내용, 통장 거래 내용 등은 권한이 없어 조사할 수 없었다. 당사자들이 검찰에 고소하면 조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모텔에 간 사실을 인정한 C 씨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용산구청에 징계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번 추문은 비정규직의 재계약 여부가 부서장의 재량권에 속해 있고, 공직사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인색했기 때문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사회는 이에 대한 논의 및 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지자체마다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가 제각각”이라면서 “용산구청의 경우 아직 정규직화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비정규직인 주차단속원으로 일하는 여성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이 주차단속원 여성은 소속구청의 같은 부서 남성 직원 2명과 구청 비서실장이 재계약과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성상납과 금품제공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은 아직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 그런데도 위 기사는 ‘용산구청’이라고 해당구청의 이름을 밝히고 관련된 인사 중 ‘비서실장’의 직책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용산구청과 용산구청 비서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기사 본문과 제목을 보면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한 성 추문에 공직사회 전체가 휩싸였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으나 위 기사 본문내용에 따르면 이 같이 ‘성추문’에 휩싸인 곳은 1개 구청일 뿐이다.

따라서 이 기사는 보도 기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요강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67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문〉

중앙일보 2013년 3월 13일자 1면 「작년 평양서 김정은 제거 시도 있었다」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위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대북 소식통이 12일 전했다. 대북 정보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 시찰 중이 아닌 평양 시내에서 위해 시도가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정확한 위해 주도 세력과 위해를 가한 시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계급이 강등된 11월 중순 이전에 내부 불만 세력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지휘한 군부 내 강경파다. 그는 지난해 2월 북한군 대장(별 넷)으로 승진했으나 11월 중장(별 둘)으로 강등됐고 지난달 26일 김정은의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때 별 넷을 달고 나와 복권됐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총괄해온 정찰총국 내부에서 지난해 세력 다툼이 벌어져 총격전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정찰총국은 노동당 작전부, 대외연락부(사회문화부), 35호실(조사부), 인민무력부 산하 대남 조직(군 총참모부 정찰국)이 2009년 통폐합되면서 만들어졌으며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조직으로 통한다. 이 과정에서 정찰총국의 주도권을 놓고 노동당 작전부와 대외연락부 출신들이 갈등하다 급기야 총격전까지 벌였다는 것이다. 김영철은 총격전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지고 한 계급(상장·별 셋) 강등됐고 이후 평양에서 발생한 김정은 위해 시도로 또 한 번 계급이 강등된 것으로 대북 소식통은 분석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당시 총격전 이후 숙청된 세력과 김정은 위해 시도가 연관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지난해 12월 12일), 3차 핵실험(2월 12일)에 이어 최근 정전협정 폐기를 주장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는 지난해의 위해 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내부체제 결속을 위해 군부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최근 핵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3단계 시나리오를 마련했으며 남한 사회와 북한 내부, 제3국 등 세 갈래로 나눠 핵전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시나리오의 1단계는 남한을 상대로 정전협정 폐기 등 전쟁 위기감을 조성하고, 남한 사회와 북한 주민을 상대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다. 이어 북한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전쟁이 터지면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출국을 종용하는 동시에 북한의 해외 공관을 통해 북한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을 철수시키라고 통보하는 2단계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적시기사는 『지난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위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대북 소식통이 12일 전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기사의 취재원은 ‘익명의 대북 소식통’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원칙적으로 보도기사의 취재원을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꼭 보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안으로서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위 기사 취재원의 익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로 이 익명 취재원이 전한 내용에 ‘김정은 제거 시도’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관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흔히 기사작성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 ‘6하 원칙’을 구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누가’ ‘언제’ ‘왜’ ‘어떻게’ 김정은 제거를 시도했는지에 대해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계급이 강등된 11월 중순 이전에 내부 불만 세력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 ‘소식통’의 불확실한 추정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취재원의 익명 처리로 인해 원칙적으로 이 취재원의 신뢰성이 떨어

질 수밖에 없는데다, 그가 전한 내용의 사실 관계의 모호함, 그리고 뒤이은 불확실한 추정 등으로 판단해볼 때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로 단정하기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설(設)'로 판단하는 게 옳은 것으로 본다.

기사 본문은 이러한 점을 감안했는지 '김정은 제거 시도'를 사실처럼 단정하여 기술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는 익명 취재원이 전한 '작년 평양서 김정은 제거 시도 있었다'는 말을 제목으로 표현하면서 인용부호도 사용하지 않고 사실화해 못박았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전하고 과장된 제목을 달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신문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